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97

2018. 9. 7. 기 획 경 제 위 원 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8월 16일, 채인묵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9.7.) 상정, 검토보고, 의결(수정안가결)

#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채인묵 의원)

○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20조에서 산학협력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서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'보조'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.

○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」으로 신설되는 서울특별 시 혁신성장위원회가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산학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규정이 삭제되고 동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 혁신성장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계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기존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, 폐지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「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」의 설립·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'산학연협력 사업심의회'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임.

#### 나.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과 보조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7조는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'기술혁신법')의 '기술혁신사업'과 '기술지도사업'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.
- 안 제17조는 기술혁신법의 관련 규정인 제11조를 명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'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'을 추가하여 '출연' 외에도 '보조'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#### <신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	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
한 <u>출연</u> 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	한 <u>출연 등</u> 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
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<u>「중소기업기</u>	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<u>「중소기업</u>
술혁신 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학	기술혁신 촉진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
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	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
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	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
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	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
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	업,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
<u>수 있다.</u>	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동법 제
	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
	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
	<u>있다.</u>
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	②
공동기술혁신사업에 <b>출연하는 경우에</b>	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
<u>는</u>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	느
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.	

- 현행「지방재정법」1)은 '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'와 '조례상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'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허용하고 있음(제18조 제2항).
- 안 제17조는 '기술혁신사업'과 '기술지도사업'에 대한 근거 법규로 기술 혁신법 제11조²)를 제시하고 있으나, 해당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출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로 적절하지 않음.

<sup>1) 「</sup>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- 입법·법률고문의 자문에 따르면, 기술혁신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, 기술혁신법에서 정한 출연·보조 대상인 "학교·기관 및 단체"는 "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"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따라서,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규정한 현행 제 17조 제1항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위반되며, 개정안의 '기술혁신사업'과 '기술지도사업'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함.
- 한편, 개정안에서 새로 출연·보조하고자 하는 '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'에 관한 사항은 기술혁신법에 적합한 근거 규정(제20조 제5항)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## 다. 산학연협력사업심의회의 설치·운영

서울시는 자치구,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 조성을 목적으로, 인력의 양성, 연구·개발, 과학기술개발의 증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등 산학역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, 서울시는 종전에 각종 산학연협력사업의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획 수립 등의 심의·조정을 위하여 '산학연정책위원회'를 운영하 였음.

<산학연정책위원회 운영 실적>

연도	2015년	2016년	2017년
회의 개최	4회 개최	4회 개최	5회 개최
주요 안건	<ul> <li>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 과제 평가(3건) 등</li> <li>15년 서울형 R&amp;D 지원 사업 계획</li> <li>지역특화산업고도화 지원 사업 추가 최종평가</li> <li>특화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지원과제 평가</li> <li>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 발 지원사업 최종선정</li> </ul>	- 과제별 최종평가·서울전략 산업 지원사업 과제 평 가·특허기술상품화 기술 개발 지원사업 평가 등 - 16년 서울형 R&D 지원 사업 계획 - 16년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등 - 16년 도시문제 해결형 기 술개발 지원사업 등 - 16년 특화산업 고도화 지 원사업 선정평가 등	사업 평가 등 - 17년 서울형 R&D 지원 사업 계획 -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 등 - 기술상용화(공개평가형) 지원사업 평가 등 - 17년 서울형 R&D 지원사업

- 하지만,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이 제정·시행('18.1.4)
   되면서 '혁신성장위원회'로 '산학연정책위원회'가 통합되었고, 「서울 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도 함께 개정되어 산 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규정이 삭제되었음.
- 한편, '혁신성장위원회'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계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, 종전의 '산학연 정책위원회'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.

- 이에 따라 안 제20조의2는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한 심의·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로 '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'를 다시 설치·운영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이는,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심의·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,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를 개정 하여 '혁신성장위원회'의 기능을 조정하고 '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' 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.
  - '혁신성장위원회'의 기능에서 산학연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거나, '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'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
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(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)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- 1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- 2.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
- 3.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
- 4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기획·평가·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- 5.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6.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97 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규정 이라 볼 수 없어 「지방재정법」에 반하는 '기술혁신사업'과 '기술지도 사업'에 대한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시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7조 제1항)

#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 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산학연 공동기	제17조(산학연 공동기	제17조(산학연 공동기
술혁신사업에 대한 출	술혁신사업에 대한 출	술혁신사업에 대한 출
<u>연</u> ) ① 시장은 중소기	연 등) ①	연 등) ①
업의 기술혁신을 촉		
진하기 위하여 <u>「중</u>	<u></u> 「중	「 <u>중</u>
소기업기술혁신 촉진	소기업기술혁신 촉진	소기업기술정보진흥
법」의 규정에 의하	법」제11조 규정에	원이 수행하는 「중
여 학교·기관 및 단	<u>따라 학교·기관 및</u>	소기업기술혁신 촉진
체가 중소기업자와	단체가 중소기업자와	법」 제20조 제4항
공동으로 수행하는	공동으로 수행하는	<u>각 호의 사업에</u> 금전
기술혁신사업과 중소	기술혁신사업과 중소	또는 기타 시의 재산
기업에 대하여 실시	기업에 대하여 실시	을 출연 또는 보조할
하는 기술지도사업에	하는 기술지도사업,	수 있다.
금전 또는 기타 시의	동법 제20조의 규정	
재산을 출연할 수 있	에 의해 중소기업기	
다.	술정보진흥원이 수행	
	하는 동법 제20조 제	
	4항 각 호의 사업에	
	금전 또는 기타 시의	
	재산을 출연 또는 보	
	조할 수 있다.	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 결한다

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1. 당연직 위원: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- 2. 위촉직 위원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  - 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  -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 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혀행 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 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에 대한 출연) ① 시장은 중소기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 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 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 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 을 출연할 수 있다.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

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 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 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 하다

개정안

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 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

(2) -----

-----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 우에는 -----

<신설> 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 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 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 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 리에 관한 사항
- 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

- 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 항
- 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1. 당연직 위원: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- 2. 위촉직 위원:서울특별시의 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 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  - 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기관에 소속된 경우
  -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.